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4

제출일자 : 2024. 2. 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공포 및 2022. 1. 13. 시행)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통장의 임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및 제5조 삭제)

나. 명예반장 규정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다. 통장 위촉을 통장 임명으로 변경(안 제7조의2)

라. 위촉장 서식 삭제(현행 별지 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4. 1. 10. ~ 2024. 1. 30.)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촉되기”를 “임명되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촉일”을 “임명일”로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 전 사직하거나 2회 이상 신규 위촉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③ 통장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분기별 위촉하되, 필요 시 매월 1일자로 한다.	<삭 제>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 단,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	<삭 제>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3. 삭제 4.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삭제 5의2. 구 시책과 구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삭 제>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생략)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별지 서식] 위촉장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명 ----------. ③ ---------- 임명되기 ----------. --- 임명일----------.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 호

위 촉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길 ○○
(○○동)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마을과 이웃을 돌보는 ○○동 마을복지 제○통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동장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박미현
연 락 처	02 - 2627 - 1043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2023.07.20 조례 제13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개정 2013.5.10>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4.06.30, 2010.11.23, 2020.3.25.>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06.30, 2010.11.23>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4.06.30, 2010.11.23>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06.30, 2007.05.23, 2010.11.23, 2020.3.25.>

②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 전 사직하거나 2회 이상 신규 위촉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2020.3.25.><개정 2023.07.20.>

③ 통장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분기별 위촉하되, 필요 시 매월 1일자로 한다. <신설 2020.3.25.>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 단,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7.20.>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3, 2010.11.23, 2013.5.10., 2022.4.20.2022.10.15.2023.07.20.>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개정2001.05.09, 2004.06.30, 2010.11.23, 2013.5.10, 2020.3.25>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개정2010.11.23>
3. 삭제 <2004.06.30>

4.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2022.4.20.>

1. 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개정 2010.11.23>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개정 2010.11.23>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0.11.23>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10.11.23>
5. <삭제 2013.5.10>
5의2. 구 시책과 구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신설 2013.5.10>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0.11.23>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5.>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09.22, 2000.12.16, 2004.06.30, 2020.3.25>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23>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개정 2010.11.23>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개정 2010.11.23>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개정 2004.06.30, 2010.11.23, 2017.1.4.>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개정 2004.06.30, 2010.11.23>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개정 2010.11.23>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개정 2010.11.23>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개정 2010.11.23>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개정 2010.11.23>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개정 2010.11.23>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개정 2010.11.23>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개정 2010.11.23>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개정 2010.11.23>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23>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23>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5>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0.11.23><개정 2013.5.10>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11.23>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3.5.10>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2017.1.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③ 통·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4.6.30><개정 2007.05.23, 2010.11.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5.>

부 칙(제1353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